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

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는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 주도로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수준향상 등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격차 해소 및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대상

대상 5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또는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사외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의 범위

- ①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 ②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 ③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 클로로포름,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사용 사업장

업종 제조업, 전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선정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선정

사업대상의 선정 기준

- ①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 재해다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모기업
- ② 50인 이상 모기업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사업장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기업
- ④ '12 ~ '18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참여 신청기간 : '19. 3. 4(월) ~ 3. 15(금), 2주간
- 접수 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 및 승인 : '19. 3. 29(금)까지 완료

●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및 혜택

A등급 중 전국 상위 10%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 정기감독 대상 선정시 일부 유예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 다음년도 KOSHA 18001 사후 또는 연장심사비 할인(50%)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 (모든 규모 협력업체) KOSHA 18001 실태심사비 면제 · (50인 미만 협력업체) KOSHA 18001 컨설팅비용 지원 · (사외 협력업체) 용자 및 클린사업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

-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추진사례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사업

안내·설명회

- 대상 사업장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고용노동부,공단
- 사업취지, 추진 절차 및 내용, 참여혜택 등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공단

프로그램

작성

- 사내·외 협력업체와 공생협력단 구성 및 프로그램 추진 세부계획 작성 모기업
- 참여대상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 전체, 사외 협력업체 자율
※단, 사외 협력업체 중 정비·보수,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 등 고위험 작업 업체는 모두 포함

프로그램

접수·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 모기업
-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 고용노동부,공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희망사업장이 요청 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 공단

위험성

평가 실시

-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 실시 지원 모기업
: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이수)

위험성

감소계획

제출·이행

-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모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등 지원계획 포함
- 협력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모기업

현장기술지도

-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 공단

추진실적제출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모기업

확인기술지도

-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 확인 공단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 내용 이행여부 확인 공단

사업추진결과

등급평가

-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 고용노동부,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모기업 부문

● 공생협력 추진의지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모기업· 협력업체 부문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 공생협력 운영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체계
2.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3.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 위험성평가 계획
2. 위험성평가 이행
3.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4. 지속적 개선
5. 기록 및 관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1. 계획대비 이행도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
3.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정도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①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②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협력업체 부문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재해 발생 수준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 ① 참여 협력업체의 사고재해 감소율
 - ②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3. 모기업·협력업체 재해 격차 완화정도



※ 평가지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부장관이 별도 정함)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

적용 대상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적용 방법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사업주교육 인정 : 10%
		위험성평가 인정 : 20%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만큼 일괄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 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업무 처리 절차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 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www.kosha.or.kr>)

클린사업 및 용자사업 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일부개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기관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건설될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액 및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 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5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10인 미만 및 고위험업종은 70%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가입 및 보험료 완납 조건, 신용평가기관의 조회결과 "양호" 조건
 ※ 주소 : <http://clean.kosha.or.kr>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응급자금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품목 및 의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일선기관명	관 할 구 역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8층)	02-6711-2891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8층)	02-3783-832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1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033-820-2513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051-520-0513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052-226-0515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18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4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빌딩 (8층, 9층, 11층)	062-949-8731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전주지청 (4층)	063-240-8553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063-460-3617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31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52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22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0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5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2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031-259-7262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 웨딩홀 (2층)	031-481-7512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17번길 3 소곡회관 (2층)	031-785-3322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648 호수빌딩 (19층, 20층)	053-609-0552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5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13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41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042-620-5682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3층)	043-230-712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36